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999. 4. 15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1일
- 다. 상정일자 : 1999년 4월 14일 (제159회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가. 제안이유

- 수수료 감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수료 감면사항 개정

-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로 개정

○ 수수료 감면사항 신설

-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문기)

수수료 감면조항중 1개호를 개정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에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였고, 1개 호를 신설하여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감면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